(사)벤처기업협회 SVI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벤처기업협회 부설 창업보육센터인 SVI (Sustainable Venture Institute)가 창업 및 기업가정신 함양과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창업초기단계의 기업에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Sustainable Venture Institute"(이하 "SVI"라 한다)이라 함은 입주자에 사업공간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사업의 주체를 말한다.
- ② "운영위원회"라 함은 SVI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퇴거 등 중차대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한 권리를 가진 위원회를 말한다.
- ③ "SVI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라 함은 SVI에 소속된 매니저를 말한다.
- ④ "전담 매니저"라 함은 SVI에 소속된 매니저 중 해당 입주자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매니저를 말한다.
- ② "SVI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라 함은 SVI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개발 또는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말하며 구성원을 포함한다.
- ⑤ "졸업"이라 함은 ① 입주자가 당초 계획에 따라 자립 기반이 구축되어 독립하는 경우 ②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하는 경우 ③ 경영난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계약기간에 앞서 스스로 퇴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SVI의 조치에 의해 퇴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⑦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계약서상에 명시된 입주일을 말한다.

제2장 입 주

제3조(입주대상)

- ① 기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② 법인기업으로써 3년 미만의 기술 기반 벤처기업
- ③ 기술기반 개인 창업기업으로써 법인으로 1년 이내에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제4조(입주제외 대상)

- ① 민.형사상 법률적 규제 중인 자
-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③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 ④ 제6조의 입주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

제5조(입주신청)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적합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SVI가 요구하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사업요약서(지정양식)
- 나. 사업계획서(자유양식)
- 다. 사업자등록증사본(기창업자에 한함)
- 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바. 주주명부(기창업자에 한함)
- 사. 재무제표
- 아. 기타(인증 및 특허 관련 확인서)

제6조(입주자 선정 기준)

- ①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입주적합여부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 ② 단,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성 및 기술성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심사과 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심사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기준의 수정, 삭제, 첨부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 ① 제5조에 의거, 입주희망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전형 한다.
- ②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전형하며, 면접 유형은 1차 서류전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발표심사로 한다.
- ③ 입주 심사위원은 SVI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전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 ①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SVI의 양식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개시일은 입주계약체결 날짜로부터 7일 이 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 ② 입주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개시일에 입주할 수 없을 경우, 입주개시일 3일 전까지 입주연기신청서를 SVI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입주계약의 연기, 취소)

- ① 입주연기는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내의 범위에 한하며 1회 가능하다. 연기된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입주 후 첫 달 관리비에 정산하여 지불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승인이 취소된다.
- 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 나. 제 8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입주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제10조(입주분담금)

- ① 입주자는 입주개시일 전까지 입주분담금(입주보증금, 보육료)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입주분담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정에 따라 분담금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분담금에 대하여는 변경사실을 기준일 30일 전에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 ① 계약 시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계약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재계약신청 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재계약 이 가능하다.
- ② 입주자가 1년 미만으로 재계약을 통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한 소정의 입주연장신청서를 계약만료일 50일 전까 지 전담매니저를 통해 SVI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SVI는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공간의 확장)

- ① 입주자가 사업공간의 확장을 희망할 경우, 공간확장신청서를 작성하여 SVI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미납된 관리비가 있을 경우 입주자는 사업공간의 확장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사업공간의 확장가능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때 사업계획발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SVI는 입주자의 사업공간 확장 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통보해야 한다.
- ④ 확장된 사업공간의 계약만료일은 기존 사업공간의 만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변경승인)

- ① 입주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야 한다.
 - 가. 상호
 - 나. 대표이사
 - 다. 기술개발 사업 아이템
- ② 제 1항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통보서 및 기타 참고 서류를 제출하고 SVI와 협의 하에 변경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자의 의무)

- ① 입주자는 입주 후 7일 이내에 입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는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SVI에 제출하여 야 한다.
- ③ 센터장은 제 2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명령, 경고,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입주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 가.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 나.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 ⑤ 입주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장 졸업 및 퇴거

제15조(졸업)

- ① 센터장은 입주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을 시킬 수 있다.
 - 가.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 등으로 입주자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경우
 - 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다. 입주자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50일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졸업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졸업확인서의 발급을 통해 졸업가능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졸업 후 사후관리)

SVI는 졸업기업에 지도, 연수, 판매알선 및 정보제공 등 성장·발전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거)

- ① 센터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통보할 수 있다.
 - 가. 사전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나. 보육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다.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마. SVI의 운영 규정을 어기거나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바. 별도의 입주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논의 없이 계약이 만료될 경우
 - 사.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 ②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으로 퇴거 예정일 30일전까지 퇴거예고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제기의 사유가 타당하 지 않은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퇴거결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보육실 폐쇄, 단수, 단전 등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퇴거조치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입주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SVI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입주보증금 정산)

입주자가 졸업, 퇴거하는 경우 미납된 관리비와 기타 SVI 내 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처리한다.

제19조(기부금 납부)

졸업 기업은 SVI가 정한 기부금 계약에 따라 현금 혹은 지분(상호협의)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시 설

제20조(시설의 범위)

시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입주자 공간	공용 사용공간 및 비품	부대시설
-개별 사업공간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임대된 비품(사무용품, 가구 등	-복도 -회의실 -카페 쏠라즈 -파쇄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머신	-전기실 -EPS실 -공용 인터넷 회선

제21조(시설의 이용시간)

- ① 입주자는 SVI의 시설을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전기, EPS실 등 SVI 전체의 업무환경과 관련된 시설에 관해서는 입주자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제22조(시설의 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SVI에 있다. 단,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3조(시설관리의 내용 및 비용부담의 범위)

- ① 시설의 운용, 보관, 보전에 대한 관리 감독
- ② 시설의 보수 관리*

<단서 조항>

- 1. SVI 공용공간 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 비용은 SVI에서 부담한다.
- 2. SVI 개별공간(입주자 사업공간) 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 비용은 입주 후 6개월 까지 SVI가 부담하되, 이후 소요되는 소모품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입주자의 부주의 및 파손으로 인해 소모되는 소모품은 6개월 이전이라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3. 소모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형광등
 - 문손잡이
 - 냉난반기의 수리(기계의 노후 및 배관시설에 따른 수리는 SVI에서 부담)

제24조(시설의 구입 및 보수, 처분)

매니저는 시설의 구입 또는 보수,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의 이용)

- ① 입주자는 SVI 내 시설관리를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가 공용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입주자는 졸업 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개별 사업공간의 구조(칸막이 설치 등)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구조변경 전 반드시 담당 매니저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④ 공용 인터넷 회선 사용 시 반드시 별도의 네트워크 사용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SVI의 시설을 손상시켰을 경우, 또는 제23조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과실에 대하여 SVI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물품의 반입)

입주자가 SVI내외로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SVI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방재관리)

- ① 입주자는 SVI의 방재관리에 관한 재규정 및 SVI 내부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방재설비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담당 매니저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입주자는 SVI내외에서 소각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입주자는 SVI에서 가입하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애 대한 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 ④ 입주자는 SVI에서 시행하는 방재교육에 입주시 1회, 분기별 1회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시행되는 방재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보안관리)

- ① 입주자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SVI는 보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입주자의 사업공간에 대한 보안책임은 입주자가 갖는다.
- ③ 공용 공간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의 책임은 SVI가 갖는다.
- ④ 입주자는 2일 이상 사업공간을 비울 경우 담당 매니저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시 SVI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제30조(원상복구)

- ① 입주자는 퇴거 및 졸업 시 임대한 사업공간 및 비품을 입주계약서에 명시된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가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SVI는 임의로 원상복구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주차)

입주자는 건물 내 주차장에 업무용차량 및 자가차량을 주차 할 경우 반드시 SVI 의 절차에 따라 주차신청을 완료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개별 시간 주차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사업공간의 출입)

매니저는 관리상 필요한 경우(보안, 위생 등) 또는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방범, 방화, 구호 등)에 한하여 입주자의 동의 없이 개별 사업공간에 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입주자 금지사항)

- ① 공중에 대해 불쾌감을 주거나 기타 공용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 ② 위험성(인화성·발화성·폭발성 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 ③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 행위
- ④ SVI가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하는 행위 등
- ⑤ 음주 가무 행위 및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 행위
- ⑤ 기타 SVI에서 필요에 따라 통지하는 제반 금지 행위

제5장 경영지원

제34조(목적)

입주자 경영상담을 통하여 각 기업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 SVI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Pool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제35조(경영지원의 범위)

SVI가 입주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같다.

- ① 사업 계획 및 전략의 수립
- ② 경영자원의 조달 및 운영
- ③ 창업 관련 상담 및 교육, 세미나
- ④ 기업 네트워크

제36조(경영지원의 내용)

- ① 사업 계획 및 전략의 수립
 - 가. 사업타당성 및 사업계획 자문
 - 나.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
 - 다. 사업전략의 수립, 점검 및 지도
- ② 경영자원의 조달 및 운영
 - 가. 정부기관 지원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제공. 지원 절차 및 지원서 작성지도
 - 나.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수립, 정보제공, 중계
 - 다. 공동 IR 기회 제공
 - 라. 인력수급 지원 및 인력개발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 마.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운영
 - 바. 경영정보 제공

- 사. 행정서비스 제공
- 아. 판로/홍보 및 마케팅 지원
- ③ 창업 관련 상담 및 교육, 세미나
 - 가. 전문 창업강좌 운영
 - 나. 창업단계 기업인증 획득 지원
 - 다. 창업단계 경영자 맞춤 교육, 세미나(경영분야별) 실시
- ④ 기업 네트워크 구축
 - 가. CEO 모임(SVI CEO CLUB) 운영
 - 나. 기업 소개 프로그램 운영
 - 다. 외부기관과의 제휴 및 협력 지원

제37조(경영지원의 이용)

- ① 입주자는 SVI가 제공하는 모든 보육프로그램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② SVI는 필요할 경우 입주자에게 추가 보육프로그램을 권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보육프로그램은 SVI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제39조(운영지침 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SVI의 제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 SVI는 주의, 경고,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SVI 개소일로부터 시행한다.